

검토보고서

안건명	부서명
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	공보담당관

(2016. 10. 26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김은모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9일(수)
- 제출자 : 허정행 의원 외 7명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6년 10월 20일(목)

4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(사용료) 및 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

< 제정이유 >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과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< 주요내용 >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범위, 광고제한 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광고료 부과기준, 광고접수 및 계약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, 광고원고의 제출(안 제7조 및 제8조)
- 사. 준용(안 제9조)-광고료 부과·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따른다.
- 아. 시행규칙(안 제9조)-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검토의견]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과 고지서 및 전광판, 모니터화면 등 광고가 가능한 홍보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등 세외수입을 증대함으로써 구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동(同)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0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주요 내용으로는
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
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범위, 광고제한을 규정하였으며

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광고료 부과기준, 광고접수 및 계약을
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, 광고원고의 제출에 대한 사
항을 규정하였고

안 제9조(준용)-광고료 부과·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서는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따른다.

안제10조(시행규칙)-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로 규정
하였음

- 동(同)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 및 전광판·TV화면 등
홍보매체 이용에 따른 광고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은 물론 광고접수 및 계
약 등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로
구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
- 검토의견으로 동(同) 조례안은 2016.10.20.~10.24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
출된 의견은 없었고,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보면 경기도 의정부
시 외 4개시, 광주시 북구 외 4개구, 그리고 서울시 서대문구가 조례를 제
정·시행해 오고 있으며,
- 동(同)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쇄물 및 홍보매
체의 범위, 사회공익성을 해치는 광고의 제한, 광고료 부과기준과 광고접수 및
계약절차, 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, 광고원고의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
고, 안 제9조(준용)에서는 2015.1.15.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
“그 밖에 광고료 부과·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「서울특
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따른다”라고 규정하는 등 마포구에서 발간하
는 인쇄물과 유선통신시설을 이용한 음성, 음향 및 영상물 등 광고가 가능
한 공공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대해서 광고료 부과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
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향후 마포구와 계약하는 마포구 인쇄물
및 홍보매체에 대한 공정한 광고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
것으로 판단되며, 그 밖에 조례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
사료됨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〈개정 2012.3.21.〉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에 따른다.〈개정 2009.4.1.〉